

5.1.8 출판부규정

제정 1997. 08. 30.

개정 2000. 04. 21.

개정 2009. 09. 07.

개정 2018. 07. 26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대학교의 교원이나 부속 기관에서 개발한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공급과 우리나라 학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도서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출판부의 명칭은 초당대학교출판부(이하 “출판부”라 한다)라 칭하고, 본 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출판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본 대학교 교재의 출판 및 공급
2. 학술 및 일반도서의 기획 및 출판
3. 본 대학교 제간행물 및 업무용 제서식 인쇄 공급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

제2장 조 직

제4조(구성) ① 출판부는 부장 1인, 간사 1인, 직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출판부장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간사 및 직원은 교직원 중에서 출판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임무) ① 출판부장은 출판부를 대표하며, 출판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
② 간사는 출판부장을 보좌하며 출판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장 출판운영위원회

제6조(구성) 출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 1인을 둔다.

제7조(임명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총장, 부위원장은 출판부장이 된다.

- ② 교무처장, 기획연구처장, 신문사 주간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본 대학교 출판부 간사가 된다. <개정 2018.07.26.>
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간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출판부의 기본운영계획 수립
2. 출판물 편집, 간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
3. 출판부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
4. 출판물의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회의) ① 회의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4장 출판물 간행 및 발간

제10조(출판계약) 본 출판부에 출판물을 발간 의뢰코자 하는 자는 <별지 제1호> 서식에 의거 출판계약을 해야 한다.

제11조(원고료) 본 출판부에서 출판하는 교재 및 기타 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한 원고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제12조(발행권 및 저작권) ① 본 출판부에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의 발행권은 일체 본 대학교의 출판부에 귀속한다.

- ② 본 출판부에서 출판한 모든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단, 재계약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장 회 계

제13조(회계연도) 본 출판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4조(회계) 출판부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.

제15조(예산, 결산 및 사업보고) ① 출판부장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② 출판부장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익금 처리) 출판부의 수익금은 본 대학교 발전기금, 교수의 학술연구보조금, 학생복지금 등으로 활용한다.

제17조(감사) 출판부의 회계 및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, 감사는 총장이 위촉한 2인으로 한다.

제18조(장부비치) 출판부장은 간행물 대장, 경리장부 및 기타 필요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 칙

제19조(시행세칙) 출판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